

## ■ 사단법인 한국화재소방학회 연구윤리 규정 ■

- 제정 2015. 08. 28.

- 개정 2019. 12. 13.

### 전 문

**제1조 (목적)** 본 규정은 (사)한국화재소방학회(이하 “학회”라 함) 소속 회원들의 연구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.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는 Guidelines on Good Publication (<http://publicationethics.org/resources/guidelines>)에 제시된 연구 및 출판에 대한 윤리적 규정을 준수한다.

**제2조 (적용대상)** 본 규정은 학회 주관의 학술행사, 연구사업, 출판사업, 교육사업 등의 학술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적용한다.

**제3조 (적용범위)** 본 학회의 연구윤리 범위는 특정 연구 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상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에 의한다.

**제4조 (저자됨)** 모든 저자는 아래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,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참여 연구자는 기여자에 해당된다. <신설 2019.12.13.>

- ① 연구의 개념이나 설계; 데이터 획득, 분석 또는 연구 결과의 해석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
- ② 논문의 초안을 작성하거나, 중요한 전문적인 내용에 대하여 비평적으로 수정한 자
- ③ 게재를 위하여 논문을 최종으로 승인한 자
- ④ 논문의 정확성 및 진실성과 관련된 의문점들이 적절하게 검토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논문과 관련된 모든 측면의 책임에 동의한 자

**제5조 (이해상충 진술)** 해당 저자는 저자의 데이터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이해 상충 가능성을 편집자에게 알려야 한다. 잠재적 이해 상충의 예는 회사의 재정 지원 또는 회사와의 관계, 이해 집단의 정치적 압력 및 학문적으로 관련된 문제이다. 특히, 연구에 적용 가능한 모든 자금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.

**제6조 (연구부정행위의 범위)**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 부정행위(이하“부정행위”라 한다.)는 연구 과제의 제안, 수행, 결과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위조 즉,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
- ② 변조 즉,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,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
- ③ 표절 즉, 타인의 아이디어, 연구 내용,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
- ④ 중복게재 즉, 연구자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처음 게재한 학술지 편집자나 저작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또는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나 저작물에 사용하는 학문적 행위
- 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즉,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, 과학적,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
- ⑥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
- ⑦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
- ⑧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도 포함할 수 있다.

**제7조 (검증시효)** 제보는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. 단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연구가 진행될 경우에는 예외조항으로 한다.

### 제8조 (제보자의 권리보호)

- ①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.
- ② 제보자는 구술, 서면, 전화,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,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.
- ③ 학회는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외

대상이 되지 않으며,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해당기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.

- ④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.

**제9조 (피조사자의 권리보호)**

- ①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,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- ② 학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.
- ③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.
- ④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, 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학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
**제10조 (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권한)**

- ①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학회장이 임명한다.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- ②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는 5명으로 한다. 논문집 편집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.
- ③ 나머지 3인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학회장이 위촉한다.
- ④ 피조사자가 위원에 포함될 경우 해당위원은 제외하고 구성한다.
- ⑤ 제보자, 피조사자,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과 준비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.

**제11조 (편집위원회의 책임)** 편집위원회는 출판 윤리를 준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: 논문 철회 지침, 학업 기록의 무결성 유지, 지적 및 윤리적 기준을 손상시키는 비즈니스 요구의 배제, 출판 수정, 설명, 철회 및 사과, 표절 및 사기 데이터의 제외. 또한 편집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유지한다. 논문을 거부하고 수락할 책임과 권한, 논문게재 및 불가된 논문과 관련하여 이해 상충을 피하는 것, 오류가 발견 될 때 수정 또는 철회 게시를 장려, 리뷰어의 익명성 보존.

**제12조 (연구 부정행위의 조사 및 결과 보고)** 본 학회의 학술활동과 관련한 연구윤리 문제가 접수되면 학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사안을 통보하고, 조사와 결

과보고를 의뢰한다.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2개월 이내에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고, 다음 각 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.

- ① 제보의 내용
  -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
  - ③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및 회의록
  - ④ 해당 연구에서의 부정행위의 범위와 사실 여부 판단
  - ⑤ 관련 증거 및 증인
- 논문의 중복 출판, 표절, 사기 또는 조작된 데이터, 저자의 변경, 공개되지 않은 이해의 상충, 제출된 원고의 윤리적 문제, 심사위원이 저자의 아이디어 또는 데이터를 도용한 연구 및 출판 위법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(<http://publicationethics.org/resources/flowcharts>)에서 제공하는 과정에 따른다. 의심되는 사건에 대한 토론과 결정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의해 다음 각 항에 따라 수행한다.
- ① 수정, 철회 및 편집상의 우려가 필요한 경우를 처리하는 프로세스
  - ② 우려 또는 철회에 대한 편집상의 표현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웹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COPE 흐름도(<http://publicationethics.org/resources/flowcharts>)를 준수

**제13조 (검증원칙)** 부정행위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으며,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,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, 관련 절차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. 또한 이사회에서는 동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14조 (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)**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, 학회는 해당 연구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, 이를 공표하고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.

- ① 연구 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
- ② 연구 결과물의 게재 취소(기출간물의 경우 유관기관에 취소 공문 발송)
- ③ 적정 기간 회원자격 상실
- ④ 제명
- ⑤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

**제15조 (기타)**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 의 결의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.

**부 칙**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